

4-자.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

■ 공시지침

【공시기관】 : **대학** 대학원 **전문대학** 대학원대학

【원자료조사시기】 : 2025년 4~5월(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)

【공시시기】 : 2025년 6월

【공시방법】 : 간접입력(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공정성지원팀)

【공시내용】 : 2025학년도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및 고등학교 지역정보별 현황

【공시양식】 : 다음 양식 적용(자료기준일: 2025년 3월 학기 신입생(3월 기준))

(단위: 명, %)

기준 연도	정원 구분	전형 유형	전형명 (대분류)	총 입학자수	출신학교 유형별 입학자 수 및 비율												
					일반고		특수목적고								특성화고		
							과학고		외고·국제고		예술·체육고		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				
학생수	비율	학생수	비율	학생수	비율	학생수	비율	학생수	비율	학생수	비율	학생수	비율				
	정원내																
	정원외																
	합계																

출신학교 유형별 입학자 수 및 비율															
자율고					기타									소계	
사립		공립			영재학교		외국인학교		외국고등학교		검정고시		그 외 기타		
학생수	비율	학생수	비율	학생수	비율	학생수	비율	학생수	비율	학생수	비율	학생수	비율	학생수	비율

출신학교 지역정보별 입학자 수 및 비율													
특별시		광역시·특별자치시		중소도시		읍면		특수		기타		소계	
학생수	비율	학생수	비율	학생수	비율	학생수	비율	학생수	비율	학생수	비율	학생수	비율

※ 기술대학은 본 항목 공시대상에서 제외

■ 검증사항

【총 입학자수】 : <4-가> 최종 등록인원, <4-나> 총 입학자와 반드시 같아야 함

■ 작성지침

【전형유형】

- 대학: 표준대입전형체계에 따른 전형유형(학생부위주(교과)·학생부위주(종합)·실기/실적위주·수능위주·논술위주·기타)
- 전문대학: 전형방법 표준체계에 따른 전형유형(학생부위주·실기위주·수능위주·서류위주·면접위주)

【총 입학자】 : 2025학년도 신입생 전형에 지원하여 입학한 자(모집인원 미달로 추가 모집한 입학자 포함), 정원내와 정원외를 포함

※ 제외 : 재입학 및 편입학, 2+4 약학대학 입학자, 산업대학 및 원격대학 3학년 별도편입학, 의학과/치 의학과/한의학과 의 본과 진급생 및 교육대학의 계절제 편입생

※ 계약학과는 재교육형/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한 인원 모두를 기재해야 함

※ 학교유형은 2025학년도 3월 신입생이 졸업한 고교의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입력(2015. 1. 1. 시행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5050호) 기준)

(예 1 : 2022년 A고교(일반고)에 입학했지만 B고교(특성화고)로 전학하여 2025년 2월 B고교에서 졸업한 경우, B고교(특성화고)의 2022년 고교유형으로 입력(졸업하는 학교의 2022년 유형))

(예 2 : 2022년 A고교(일반고)에 입학했지만 2023년에 A고교가 자율고로 전환된 경우, A고교의 2022년 고교유형(일반고)으로 입력(입학연도 기준의 고등학교 유형))

【일반고】 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6조의3제1항의 일반고등학교

【특수목적고】 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0조제1항의 특수목적고등학교

【특성화고】 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1조제1항의 특성화고등학교(대안교육 특성화고 포함)

【자율고】 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6조의3제4항의 자율고등학교

【영재학교】 : 「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」 제19조에 의하여 지정된 영재학교

【외국인학교】 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 외국인학교

【외국고등학교】 : 국외에 소재한 학교로써 해당 출신학교 입학자가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8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은 학교

【검정고시】 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

【출신학교 유형별-그 외 기타】 :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의 외국교육기관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0조의 외국교육기관 및 제223조의 국제학교, 대안학교,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, 폐교 등

【특별시】 : 2025학년도 신입생 중 출신고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

【광역시·특별자치시】 : 2025학년도 신입생 중 출신고교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인천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인 자

※ 광역시·특별자치시 지역 내 군/읍면지역 소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은 읍면지역에 포함

【중소도시】 : 2025학년도 신입생 중 출신고교의 소재지가 광역시·특별자치시가 아닌 시지역인 자

※ 중소도시 지역 내 읍면지역 소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은 읍면지역에 포함

【읍·면】 : 2025학년도 신입생 중 출신고교의 소재지가 읍 또는 면지역인 자

※ 출신지역이 광역시/중소도시이면서 군/읍면지역일 경우 읍면지역에 포함

【특수】 : 2025학년도 신입생 중 출신고교의 소재지가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도서, 벽지에 해당하는 자

【출신학교 지역정보별-기타】 : 외국고등학교 등

■ 참고사항

-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(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)를 통해 제출한 자료 연계 활용
-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조사대상학교가 아닌 경우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